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16
----------	-------

발의연월일 : 2026. 1. 13.

발 의 자 : 김남희·이수진·양부남
전진숙·장종태·김 윤
복기왕·남인순·정태호
박민규·이성윤·이광희
최혁진·모경중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보호·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강간·추행 등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과 달리 취급되어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성인에 비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협박과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경우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본인이 완전한 자발적 의사로 성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종종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2024년도부터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아청센터)’로 명칭이 변경

되었는데, 현재 아청센터는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그루밍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도 대상으로 하여 상담·의료, 사건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명칭과 지원대상 범위가 아직 법률에 명확히 반영되지 못하여 수사기관 등 타기관과의 원활한 연계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어렵고,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운영상의 어려움마저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이들이 보호·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성착취물, 그루밍 등의 피해아동·청소년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시켜 신속하게 보호·지원하며, 그 밖에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강화와 인력확보 등을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용어 변경하고, 그 범위에 성착취물 제작·배포, 그루밍 등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도 포함함(안 제2조, 제38조, 제45조, 제46조).
- 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명칭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제11조, 제

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범죄로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함(안 제47조의2, 제56조 및 제57조).

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등에 통지하도록 하고,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신속하게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상담·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안 제3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2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를 “제11조·제11조의2·제12조·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제15조의2”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하며,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조사하기 전에 해당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신속하게 제47조의2에 따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상담·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한다.

제45조제2호 및 제3호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각각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로 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2조부터 제15조”를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제3호·제4호·제5호 및 제7호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각각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각각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한다.

③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제9호의2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한다.

제57조제3항제5호의2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이 법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본다.

제3조(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6의2. “ <u>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u> ”이란 피해아동 · 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u>제13조제2항 · 제14조 · 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 · 청소년</u> 을 말한다. 7. ~ 9. (생 략) 제38조(<u>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u> 에 대한 조치 등) ① (생 략)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u>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u>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u>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 지원센터</u> 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 <u>성착취 피해아동 · 청소년</u> ----- ----- ----- <u>제11조 · 제11조의2 · 제12조 · 제13조제2항 · 제14조 · 제15조 · 제15조의2</u> ----- ----- ----. 7. ~ 9. (현행과 같음) 제38조(<u>성착취 피해아동 · 청소년</u> 에 대한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성착취 피해아동 ·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u> ----- ----- ----- <u>성착취 피해아동 · 청소년 지원센터</u> -----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
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
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
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제45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
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
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
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통지하여야
하며,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을 조사하기 전에 해당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신속하게
제47조의2에 따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상담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

1. (현행과 같음)
2. -----성착취 피
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제45조(보호시설) -----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 ----- ---
1. (생략) 2.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u> 보호·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 필요한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u>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1. (현행과 같음) 2.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u>----- ----- 3.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u>----- -----
제46조(상담시설)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략) 2.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u>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3. 그 밖에 <u>아동·청소년 성매매</u>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② (생략)	제46조(상담시설) ①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u>----- ----- 3. -----<u>아동·청소년 성착취</u>-----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u>성매매 피해아동·청</u>	제47조의2(<u>성착취 피해아동·청</u>

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성
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아동·청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
영할 수 있다.

②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1.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
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
담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교육·상담 및 지원
3.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
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4.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

-----성착취 피해아동·청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
-----.

②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1.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
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

2.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3.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4.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신체적·정신적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5.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프로그램 운영

6.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5.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6. 아동·청소년 성착취-----

7.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

③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및 자격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
한다.

④ -----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

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

[illegible]

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9. (생략)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10. ~ 26. (생략)

② ~ ⑨ (생략)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 ② (생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5의2. 제56조제1항제9호의2의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10. ~ 26.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

<u>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 .</u> <u>청소년 지원센터</u> 6. ~ 17. (생 략) ④ ~ ⑥ (생 략)	<u>-----성착취 피해아동 .</u> <u>청소년 지원센터</u> 6. ~ 17.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